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33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안일자 : 2024년 2월 5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 관리·감독 사무(변경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징수) 자치구 위임
- 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 환수
- 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 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사무의 자치구 위임(변경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징수)

(1)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

- 지난 2022년 12월 1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되고,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가 도입됨.
- 야생생물법의 개정내용¹⁾에 따르면, ‘야생동물카페’ 처럼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야생동물의 전시가 가능함.

1) 야생생물법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제69조(벌칙)제1항제17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2025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²⁾는 야생동물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생산·판매·위탁관리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이와 함께 기존 야생동물 전시시설 및 판매시설의 전시자가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규정의 시행일 전(2023. 12. 13.)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보유동물에 대해 한시적(4년간)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³⁾이 신설됨.
- 이에 따라 기존 전시자가 2023. 12. 13.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 12. 13.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법 개정 전후 야생동물 시설 유형별 변화 >

종전 사각지대	관리제도 신설		지자체 사무	
	야생동물 전시시설	전시금지 (기존 시설은 신고 시 '27.12.13.까지 유예)	전시 신고	서울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전시시설	⇒ 야생동물 전시시설			
	⇒ 야생동물 판매, 수입, 생산시설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 전시 가능 ('25.12.14.부터)	영업 허가	자치구

자료: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내부자료

2)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시행 2025. 12. 14.).

3) 야생생물법 부칙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유형별 전시시설 신고현황('24. 2월) ＞

자치구	계	전시시설*	판매시설**
계	24	8	16
종로구	6	2	4
광진구	1	1	-
은평구	2	1	1
마포구	3	3	-
강서구	1	1	-
구로구	3	-	3
영등포구	1	-	1
관악구	2	-	2
서초구	1	-	1
강남구	1	-	1
송파구	1	-	1
강동구	2	-	2

* 전시시설 : 시장에게 신고한 시설에 한하여 '27.12.13.까지 전시 가능

** 판매시설 : 현재 허가없이 판매시설 운영가능하나 전시행위를 위해서는 시장에게 신고 필요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시행 이후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판매·전시 지속 가능

(2) 위임사무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의 변경신고 수리’ 사무와 전시행위가 허용되는 유예기간 동안 금지행위 규정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연 생태과	(신 설)	(신 설)		자연 생태과	4. <u>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 시 신고 시설의 관 라 감독사무 가. 변경신고 수리</u> <u>나. 과태료 부과 징수</u>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법률 제18908호) 부칙 제3조 제1항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법률 제18908호) 부 칙 제3조 제2항	구청장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⁵⁾가 2025. 12. 14.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전시행위는 주로 구청장의 영업허가에 의해 야생동물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효율적인 업체관리 등을 위해 사무처리 주체를 미리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사무는 민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위임기준을 충족하고⁶⁾, 민원편의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변경 신고 수리 사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등 야생동물 관리사무를 구청장의 사무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사무위임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⁷⁾가 관리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임 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구의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⁸⁾.

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무의 일부 변경(종합병원 개설허가 사무 환수)

(1)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무 개요 및 환수 배경

-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개설허가권자가 구분되어 있음.

5)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7) 25개 자치구 중 동의: 19개구, 부동의: 6개구

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개설 등)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원급: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종합병원, 병원급: 시·도지사 허가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개설 및 변경허가 권한은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고, 이는 198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⁹⁾.

< 현행 조례상 의료기관 관리권한 구분 >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 「의료법」 제33조제5항	구청장

- 그러나 종합병원, 병원급의 개설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운영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한 의료기관의 분포, 비효율적인 병상 운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전담병상 신속 확보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9) 서울특별시조례 제2523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89. 11. 16. 공포).

- 2023. 12월 말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정신병원 제외)는 강남 67개, 송파 43개인 것에 비해 용산 2개, 중구 9개 등이며, 병상수 또한 강남 7036병상, 송파 6260병상인 것과 비교해 용산 773병상, 중구 758병상으로 지역 간 편차 및 병상수 불균형이 발생함.
- 이에 감염병·재난 등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시의 의료기관 관리권한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병상관리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합병원 개설허가 권한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¹⁰⁾에서도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를 위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경우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2) 개정내용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기본시책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종합병원의 개설허가 권한을 환수하되, 서울시와 자치구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변경허가’는 구청장으로서의 위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 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 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보건 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 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10) 보건복지부, ‘(2023-2027)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2023. 8.

현행				개정안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가. <u>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u> 의 개설 허가 나. <u>병원 등</u> 의 변경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 「의료법」 제33조제5항			가. <u>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u> 의 개설 허가 나. <u>종합병원·병원 등</u> 의 변경 허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이와 같이 그동안 위임사무를 자치구에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필요성, 중앙정부 기본시책의 기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합병원의 개설허가 사무의 환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사무의 환수와 관련한 자치구의 의견조회 결과¹¹⁾, 개설허가 권한뿐만 아니라 변경허가 권한 또한 함께 환수토록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무처리의 이원화에 따른 혼선 방지 차원에서 향후 변경허가 권한의 환수 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라. 주관부서의 변경

- 동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있음.

11) 25개 자치구 중 동의: 11개구, 의견없음: 12개구, 부동의: 2개구. 부동의 사유는 종합병원 개설 허가권 및 변경 허가권을 함께 환수해달라는 이유임.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조직담당관의 시립대학교 조직·정원 조정 기능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창의행정담당관의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기능이 조직담당관으로 이관¹²⁾되고 이에 따라 ‘서울시립대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임용 사무’의 주관부서가 변경됨(2023. 8. 21.)¹³⁾.
 - 입지 기반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종전의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가 업무의 일부 조정과 함께 ‘산업입지과’로 부서명이 변경됨(2024. 1. 1.)¹⁴⁾.
 - ‘자원회수시설과’가 조직개편(2023. 7. 1.)으로 신설¹⁵⁾되면서, 종전의 ‘자원순환과’가 담당하던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관련 업무 중 소각시설 관련 업무가 이관됨(업무분장 비교는 참고자료 참조)에 따라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등록에 관한 사무’와 ‘폐기물처리 신고 및 입지선정 관련 사무’의 주관부서에 ‘자원회수시설과’가 추가됨.

< 개정조례안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내역 >

사무명	주 관 부 서	
	현 행	개 정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임용	창의행정담당관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전략산업기반과 (경제정책실)	산업입지과 (경제정책실)

12) 서울특별시규칙 제458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11호.

13)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사무는 시정연구담당관(現 창의행정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기존 조직담당관의 분장사무에서 시정연구담당관(現 창의행정담당관)으로 이관(2022. 1. 1.)되었으나 2023년 8월 개편에 따라 조직담당관으로 다시 환원됨.

14) 서울특별시규칙 제460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4항.

15) 서울특별시규칙 제456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기후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좌 동 + 자원회수시설과 추가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	자원순환과	좌 동 + 자원회수시설과 추가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자원순환과	좌 동 + 자원회수시설과 추가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일부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없는 규정 또는 삭제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함¹⁶⁾.

< 수정의견 >

원 안				수 정 의 견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구청장	기후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 <u>물환경보전법</u> 」 제67조 및 「 <u>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u> 」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 <u>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u> 」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16) 예를 들어, 기후환경본부의 위임사무 중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으로 인용된 규정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18. 1. 18.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는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관계없는 출입·검사에 관한 규정이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이미 삭제된 조항임.

원 안				수 정 의 견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또한 집행기관이 조직변경에 따른 일부 변동사항¹⁷⁾의 경우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주관부서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입법조사관	연락처
성동준	02-2180-8055

17) 자원회수시설과 신설(2023. 7. 1.), 시립대학교 운영 지도·지원 사무 주관부서 변경(2023. 8. 21.).

【 참고자료 】 < 자원순환과 및 자원회수시설과 분장사무 비교 >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1. 자원순환시행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시설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관련 시책홍보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자원회수시설)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항	4.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난지도매립지 사용종료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기술·정보의 수집·개발 및 보급	6.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인허가에 관한 사항	7.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8. 재사용 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쓰레기 감량화·재활용의 기본계획 수립·시책개발 및 홍보	
10. 재활용업자의 육성 지원	
11.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관한 사항	
12. 대형폐기물 및 폐형광등·폐건전지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재활용 신고에 관한 사항	
14.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업·처분업에 관한 사항 (단,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재류는 제외)	
15. 재활용센터 및 새활용센터에 관한 사항	
16.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17.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69조제1항제17호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부칙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의 공포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제15조(금지행위)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